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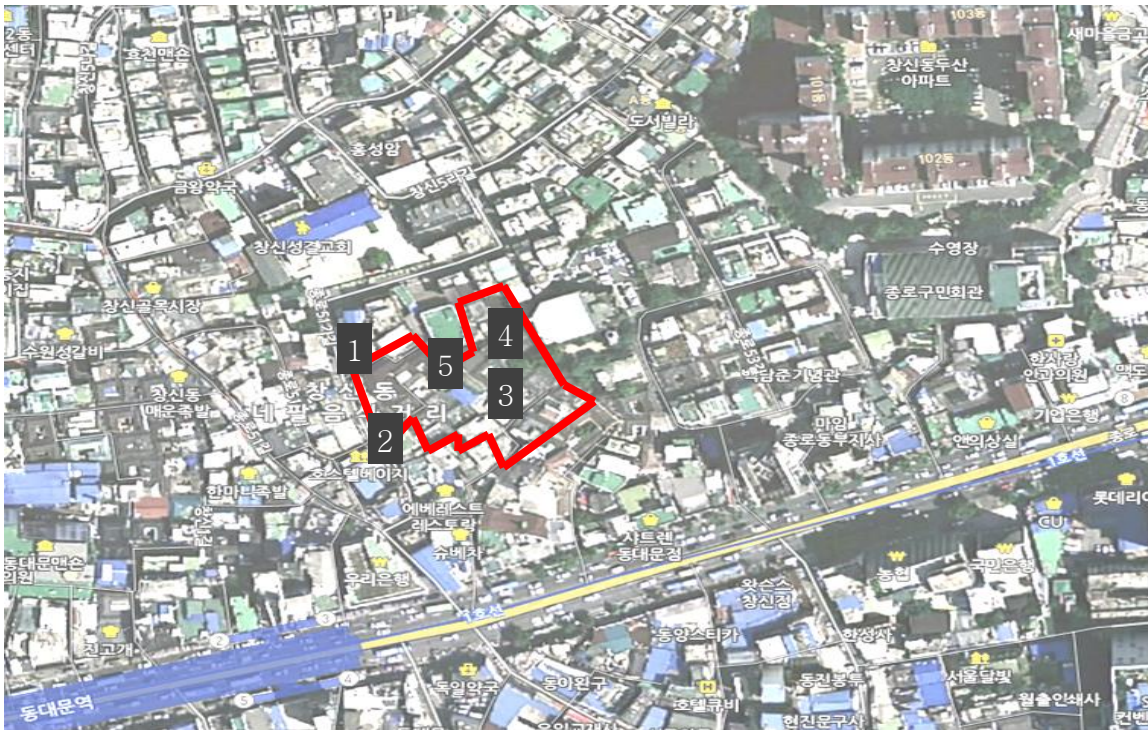
주 택 과

추진경위

2004. 6. 25.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
2007. 4. 30.	창신 · 송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3. 10. 10.	창신 · 송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 주거환경개선예정구역 환원
2017. 3. 1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시→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제1항제1호 - 정비예정구역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제 추진
2017. 6. 16. ~ 7. 16.	주민공람(30일 이상)



창신동 143-27 일대 정비예정구역 현황사진



정비예정구역 현황

- 위치 :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 면적 : 3,000 m²
- 토지등소유자 : 42명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건축계획 : 용적률 210%, 건폐율 50%
- 변경내용

구분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m ²)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정비유형	비고	정비기본계획 고시일
신설	10	창신동	143-27	3,000	210	50	-	1	전면 개발		'04.06.25 서고시2004-204
변경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 해제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주민공람

주민의견 청취 현황

- 의견청취 기간 : 2017. 6. 16. ~ 2017. 7. 16.
- 의견청취 방법 : 구보, 홈페이지 및 해당 토지등소유자 안내우편 발송
- 접수의견 : 0건(별도의견 없음)



■ 검토의견

■ 정비예정구역 해제

- 예정구역 내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의사가 없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정비구역등 해제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제1호

-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2항

-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구청장은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3항

-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은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
- 

감 사 합 니 다.

